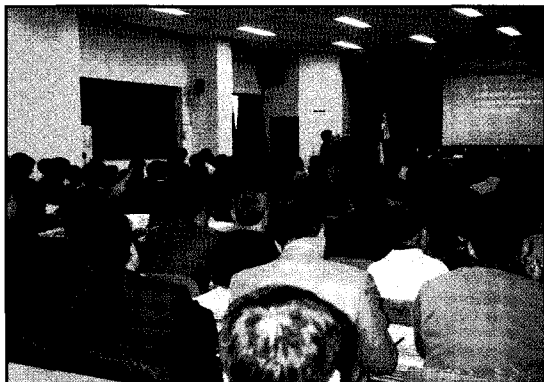


본회 주최 주요 담질병 세미나 개최

주요 담질병 세미나가 본회와 대한양계협회 공동주최, 농수축산신문 주관으로 지난 21일 분당 수의과학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회 회원사 관계자를 비롯 업계관련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담 뉴캐슬병 근절 등 2002년 방역대책(김창섭 농림부 가축위생과 사무관) ▲담 뉴캐슬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방제대책(김재홍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장) ▲국내 가금살모벨라 감염증의 발생현황과 방제대책(김기석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 ▲오기석대표(대연농산) ▲최성갑사장(도원농산) ▲최명구사장(선진농장) ▲최길영사장(영남농장) ▲오경록사장(남덕SPF)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본지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위해 2회에 걸쳐 주제발표내용을 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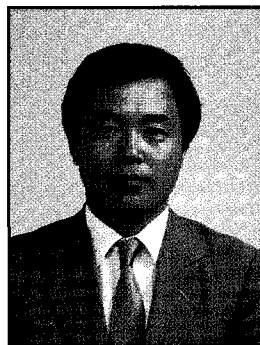
담뉴캐슬병 근절 등 2002년 방역대책

1. 담질병 발생동향

작년도 담 뉴캐슬병 등 주요전염병의 발생은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01년도 동기 대비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 뉴캐슬병은 작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 양계농가 예방약 공급으로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 결과 발생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가금티푸스의 발생은 작년도에 비해 늘어났지만 실제 일선의 동향은 금년도부터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생균 예방약을 접종한 영향으로 폭발적인 발생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는 발생건수는 줄었지만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생이 확인되고 있어 농장간 차단방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
수의사무관 김창섭

〈주요 닭전염병 발생상황〉

구분	닭 뉴캐슬병	가금티푸스	가금인플루엔자*
'00년 발생건수	84건	79건	30건
발생두수	1,257천수	725천수	1,374천수
'01년 발생건수	40건	121건	1,418천수
발생두수	586천수	735천수	

* 수의과학검역원의 혈청검사 결과로 모두 약병원성으로 판명됨

2. 닭 질병 방역 및 수출검역 문제점

가. 국내 방역부분

- 1) 뉴캐슬병 예방접종시기 및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확인방법이 복잡하여 미접종 농가의 적발과 과태료(300만원이하) 처분이 지난
 - 야외바이러스의 전국적 분포, 예방약 제품별 특성, 농장간 방역차이 등으로 돼지콜레라와 달리 혈청검사만으로 접종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 혈청검사 결과에 대한 농가의 불신이 파생됨
 - 예방접종율이 80%이상 될 때까지는 혈청항체가외에 농가의 예방접종대장·예방약 空瓶확인, 바이러스 분리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소요 뉴캐슬병이 살처분 보상 대상질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질병 발생시 농가 또는 해당 질병을 진단해 준 민간진단기관 등이 이를 은폐하고 감염 의심 닭의 조기 출하 등 불법 유통 초래
 - 국내 농가의 관행을 미루어 볼 때 예방접종율이 낮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오히려 농가의 예방접종 등 방역 소홀을 부추겨 근절대책을 실패할 소지가 높아짐
- 2) 육계 사육농가의 예방접종, 바이러스 차단 등 방역의식의 취약
 - 예방접종시 접종 스트레스(사육정체)를 이유로 농장에서의 2차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있음
 - 오염된 종이卵座의 반복사용, 출입차량(사료·약품)의 소독·통제 취약, 죽은 닭의 개 사료 사용 등 총체적인 방역관리의 결함과 경영규모의 영세성으로 공동방역참여, 민간방역단체에 대한 방역기부금 출연 등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방역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높음
- 3) 혈청검사 등 방역업무에 정부 방역인력 투입 한계
 - 혈청검사 대상물량이 많고 검사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더러 검사결과에 따른 농장점검을 강화할 경우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돼지콜레라에 비해 대상농가수가 많고 혈청검사 시간도 더 걸림
 - 시군당 농가수 : 1,500호(돼지 150호), 1인당 혈청검사 능력 : 100건/일(돼지300건)
- 4) 닭 사육통계의 편차로 예방약 적정공급이 어렵고 종계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로 방역관리에 어려움
 - '00년 사육통계(104백만수)·도축실적(121)·사료생산실적(167)
 - 사육통계 기준에 의한 뉴캐슬병 예방약 100%를 공급하여도 실제로 일선에서 예방약 물량의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종계업·부화업의 신고업종 전환에 따라 방역조치 위반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미신고 업체

의 난립 등으로, 종계·달걀을 통해 전염되는 추백리, 가금티프스 등 난계대 질병의 방역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방역조치를 소홀히 한 종계장·부화장에 국한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경우 미신고 등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불신이 커질 우려가 높음

나. 수출검역·검사부분

1) 일본정부가 요구하는 뉴캐슬병 비발생 증명조건에 충족되는 지역(농가) 확보에 어려움

○작년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뉴캐슬병이 발생되었고, 육계의 예방접종율, 토종닭·오리·야생조류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등 요인을 감안할 때 수출농장 반경 50km내 90일 동안 비발생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 극히 한정되어 현재 여건으로는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불투명

2) 수출확대를 위한 닭 도축장의 위생관리 실태(대장균, 뉴캐슬병 바이러스 등 검출)가 미흡함

○HACCP 인증 닭도축장 : 61개소중 9개소

○시·도의 닭도축장 미생물 검사결과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검출

- '01.상반기 검사결과 9개소 위반(경기7, 충북1, 충남1)

※ 잔류물질의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도축장)는 없었음

⇒ 일본의 가공장 HACCP인증,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 요구(수입시 검사)를 대비하여 사전 검사시스템 구축과 특별관리가 필요

3. 2002년 사업방향

가. 기본방향

2002년도 닭을 포함한 가축방역 정책은 금년도에 이어 선진국 형태의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닭의 경우 정부는 농가 개별단위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직접 이행하기가 어려운 「농장 또는 도축장 혈청검사」「종계장 검진 및 살처분」「수송차량 소독 등 이동간의 차단방역」「예방약 개발·보급」「우수종계장의 인증」「수출입 검역」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뉴캐슬병 예방접종」이나 「추백리 자율검진」「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를 적발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과태료 조치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뉴캐슬병은 조기 근절차원에서 소요 예방약 전량을 내년도에도 지원해 주고 종계장의 방역관리를 위한 마이코플라스마 예방약도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해 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산관계 농장체형, 도축되는 육계의 혈청검사에 닭계열화 업체의 참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 의존해 왔던 가금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성 질병의 바이러스 분리·동정검사를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른 현장 방역조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나. 사업별 추진계획

1) 닭 뉴캐슬병 예방주사

뉴캐슬병 예방약은 금년도 수준인 8억수(부화장4, 농장4), 40억원을 지원하고 농장의 2차 예방접종 물량은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늦어도 2월까지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기에 배정하였으나 금년부터 예방약의 구입방법이 조달청의 단가계약 구매로 전환됨에 따라 단가계약 체결이 늦어져 지역에 따라 3월말경 공급될 계획이다.

2)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예방주사

종계장에 지원되는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약(생독, 사독)은 작년 수준보다 약간 증가된 5,092천수분, 560,109천원을 지원하고 뉴캐슬병 예방약과 마찬가지로 사업 첫해였던 금년도의 일부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조기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약 역시 조달단가 계약체결로 인해 체결이 늦어졌고 특히 생균예방약의 경우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질 전망으로 종계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조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체결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3) 종계장 추백리 검진

종계장 추백리 확인검사는 금년도 수준(128천수, 23백만원)으로 추진하되 백세미의 추백리 감염 시험조사를 5월내에 실시하여 관련 산란 실용계에 대한 검진과 도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확인검사 결과 양성율이 1% 이상인 종계장에 대하여는 양계협회 간행물을 통해 명단을 공표토록 할 계획이다.

4) 가축혈청검사사업

혈청검사 물량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및 구제역 청정화로 검사 수요가 줄었지만 사업물량은 640천건(뉴캐슬병 500천건)에 43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5) 바이러스 검사장비 확충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바이러스 질병 검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본소 1개소 100백만원 기준으로 총 9개소, 900백만원의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고 검사에 필요한 SPF종란 등 검사재료비의 지원과 함께 검역원의 기술교육으로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검역원에서 실시해 왔던 바이러스 분리·동정업무를 지방에서도 하게 됨으로써 가금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현장방역조치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6) 이동식 차량소독시설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장간 지역간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이동식 차량소독시설을 각 도 시험소당 10기씩 총 90기 1,3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도 신규로 지원되는 이동식 차량 소독시설은 작년도 구제역 가상훈련과 전북도 익산 정착촌의 돼지 오세스키병 발생시 필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당 장비를 구입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 보관토록 한 후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시 발생농가 주변지역에 설치·운영케 함으로써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본다.

7)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지급

닭 질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은 종계의 추백리에 한하여 극히 부 분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금년도 닭뉴캐슬병 예방접종율을 2~3차례 정도 조사한 후 집종율이 80% 이상이 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뉴캐슬병에 감염되어 이미 폐사된 것은 타 축종과 마찬가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축주의 예방접종 실시 경과를 분석하여 방역 소홀히 드러날 경우 엄격한 차등지급과 과태료 제도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살처분 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방역관리 소홀 우려를 불식토록 할 계획이다.

8) 가금인플루엔자 검역

금년도 중국에서 수입된 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작년말부터 추진하는 수입 가금육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역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검역강화를 위해 중국산 가금육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상 매건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위험도가 없다고 평가될 경우 모니터링 검사로 전환해 나가고 시료채취도 검출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 건당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가금육의 인플루엔자 정밀검사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작년말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검역원내 "준차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 시설을 활용하여 국내에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유입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항원·조직병리·바이러스 검사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4. 닭고기 수출을 위한 방역대책

기본방향

1단계 대책 ('01.12~'02.1까지 경기도 지역 시범실시)

- ◇ 예방접종을 향상 및 검색강화로 발생의 최소화 추진
- 수출 닭도축장 출하 육계농가별 뉴캐슬병 혈청검사 전체실시
 - 검사방법 개선 및 수출업체에서 시험소에 검사인력 지원
 - 예방접종 미실시 의심농가의 예방약 추가지원 등 중점 방역관리
- 종계장의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진확대로 살모넬라 등 검출 차단
 - 수출업체 자율적 검진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후 검역원·경기도역할 분담, 확인검사 실시
- ◇ 내수·수출용 구분 도축, 미생물·잔류물질 등 모니터링 검사 확대실시로 일본의 검사강화를 대비한 수 기반 구축
- 수출 도축장 지정요건(HACCP, SOP 등) 및 검사기준 강화
 - 검출원인 분석 후 원인제공 도축장, 출하농장의 수출작업 배제

2단계 대책('02년도부터 단계적 적용)

-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등 방역관리 위반농가에 대한 처분 강화
- '02.7월부터 뉴캐슬병 예방주사 미실시 농가 과태료(300만원이하) 처분, 6월말까지 사전 홍보 및 전염병 발
- 생시 원인분석 등 실시
- 종계장·부화장의 뉴캐슬 예방접종, 추백리 검진 위반시 신고 반려, 예방약 지원중단 및 과태료 처분
- ◇ 향후 방역기관에 검사인력 지원, 계열 농가관리·검사기반 구축 등 자구노력 없이 수출을 희망 하는 업체는 수출지원 배제
- 농가의 자율적 검진 및 공동방역체제 전환으로 정부의 인력 및 예산의 적정 운영도모
 - 경기도 벤치마킹 사업 추진 후 문제점 보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 ◇ 근절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대 투자, 기술개발 및관련제도 개선

가. 경기지역 시범사업 추진·평가

기관	기관별 추진실적	평 가
경 기 도	<p>① 예방접종확인서 첨부제도 시범추진</p> <p>○ 닭도축장 출하시 축주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첨부 제도를 경기도에서 시범 추진</p> <p>-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p>	<p>○ 경기도 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 함에 따라 경기도로 출하한 타지역 농가의 협조 미흡</p> <p>- 예방접종확인서 제출 의무화 제도의 전국적 시행 및 사전 충분한 홍보 필요</p>
	<p>② 부화장 중추농장 예방접종실태 점검 (기간 : '02.1.17~25)</p> <p>○ 부화장(44개소)</p> <p>- 분무기 설치 및 가동,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예방약 보관상태 점검결과 양호</p> <p>- 예방약 공급 : 년 4회 공급</p> <p>· 100% 공급을 목표로 연간 4억수분 공급</p> <p>· 부화장에서는 80% 정도만 공급된다고 주장</p> <p>○ 중추농장(15개소)</p> <p>- 예방접종확인서 수령, 예방접종기록 및 사양 일지 보관상태 양호</p> <p>- 예방약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결과</p> <p>· 정부지원 예방약 사용실적이 6농장으로 저조(30%) 하고, 닭전염성기관지염(IB)과의 혼합 예방약 공급 희망</p>	<p>○ 예방접종 100% 실시 지원</p> <p>- 예방약 공급 부족은 사육통계와 실수요의 차이에서 기인됨</p> <p>·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부화실적 등을 조사하여 추가지원 검토</p> <p>○ IB 예방약 지원 관련</p> <p>- 중추농장의 경우 정부지원 예방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농가 자체적으로 혼합예방약을 사용</p> <p>· IB는 정부지원 대상 예방약이 아니므로 현행 예방약 지원 방식 유지</p>
	<p>③ 혈청검사 민간인력 지원</p> <p>○ (주)마니커에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지원한 검사보조인력(수의과대학생 2인) 활용결과 1인당 전체 검사소요인력의 10% 정도 지원효과</p>	<p>○ 지원인력에 대한 긍정적 효과 기대</p> <p>- 검사보조인력 지원을 통한 긍정적 효과 거양</p>

기관	기관별 추진실적	평 가
경	<p>④ 검사방법 개선 검토('01.12.7~'02.1.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준 검사법인 H법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 검사법 개선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법과 ELISA법의 비교를 위하여 육계 2,500수에 대한 비교시험 결과 두 방법간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HI 검사에서 항체음성의 경우에도 ELISA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고 HI검사 항체 양성인 경우에도 ELISA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는 비율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ISA법과 H법과의 검사결과 차이 해소를 위해 ELISA 검사방법 표준화 등 보완 추진 필요 - 검사의 편이성과 시간·인력의 절약을 위하여 ELISA법을 병행 활용하되 판정은 HI 결과 기준 · H법과 ELISA법을 50:50으로 실시 - ELISA법에 대한 결과판독 기준 설정을 위한 지속적 보완 추진 · 금년도에 전국적 시범 추진 후 계속 활용여부 판단
	기 도	<p>⑤ 예방접종여부 판정을 위한 기준항체가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법에 의한 항체역가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계장 출하 육계 · 72농가 2,500수 검사결과 평균 HI 역가는 3.3으로 나타남 - 농장에서 2회 예방접종한 육계 · 2농가 20수씩 5회 검사실시 결과 도계시 평균 HI 역가는 각각 4.2와 2.3으로 나타남
		<p>⑥ 계란집하장 닭도축장 출입차량 소독실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소독시설 결빙으로 출입차량 소독 불량

기관	기관별 추진실적	평 가
	<p>⑦ 도축장 위생관리실태('01.12.19~12.21)</p> <p>○ 10개 가금육도축장(닭도축장9, 오리도축장1) 도축과정별 검사결과 양성시료 수</p> <p>- 분 변 : NDV(8), AIV(1), 살모넬라(5) - 1차냉각수 : NDV(3), 살모넬라(8) - 최종냉각수 : NDV(3), 살모넬라(5) - 닭 고 기 : NDV(1), 살모넬라(10)</p>	<p>○ 도축장 위생 개선 필요</p> <p>- 검역원에서 수출작업장을 대상으로 뉴캐슬병 바이러스 분리방법 등 자체 모니터링검사 위탁교육 실시('02.1.7~2.2)</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전 요 원</p>	<p>⑧ 수출업체 자체 품질관리 및 계열농가 관리 실태 점검</p> <p>○ 닭고기 및 작업장 위생관리 실태 - HACCP 관리기준에 의거 적절하게 운용</p> <p>○ 미생물 오염도 조사(세균, 대장균, 살모넬라) - 13건(최종세척후 도체 5, 최종냉각수 3, 포장 도체 5) 검사결과 · 최종세척후 도체 5시료중 2건 살모넬라 검출</p> <p>○ 잔류물질 검사(항생제 5종, 합성항균제 12종, 농약 3종) 결과 - 닭고기 2건 검사 결과 불검출</p>	<p>○ 작업장 위생관리 및 잔류물질 등 안전성 양호</p> <p>- 미생물 및 잔류물질에 대한 사전 검사시스템 강화 필요</p>
	<p>⑨ 종계장의 추백리 자율검진 등('02.1.10~11)</p> <p>○ 12개 종계장에 대한 검사관련 기록, 진단액 수 불대장, 출입자 차량 통제 및 소독실시 사항 점검 : 기록은 잘 정리되어 있음</p> <p>- 추백리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에 120일령 이상의 종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축주 책임 하에 전수 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수 검사의 어려움 토로</p> <p>· 실제로 2만수 계군의 경우 3인 1조로 실시하여도 16일 이상 소요</p>	<p>○ 전수검사 철저 추진 노력 필요</p> <p>- 동 질병은 종계장에서 근절하지 못할 경우 종란을 통한 전파로 전 양계장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 검사체계 유지</p> <p>· 전수검사 촉구 및 청정화 농가에 대한 단계적 검사축소</p> <p>· 현행 축주가 양성계를 자율도태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p>

기관	기관별 추진실적	평 가
검 역 원	<p>⑩ 경기도의 종계장 추백리 확인검진 실태 및 양성 계 발생농장 조치사항 점검('02.1.10~12)</p> <p>○ 종계장의 추백리 자율검진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실태를 사양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고하고 있음 - 시험소의 자율검진은 "거래명세표와 세금 계산서"로 확인 - 추백리 양성 : 57농가 2,833수 <p>○ 확인검사 및 방역관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검사 실시여부 : 실시 - 양성검출(종계장) : 216수(70농가) - 1%이상 양성으로 전계군 도태한 농가 : 없음 - 1%미만 양성으로 살처분보상금 지급 농가 : 없음 	<p>○ 종계장의 추백리 자율검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검진 대상 62농가중 57농가 (92%)에서 추백리가 발생하고 발생 농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양성율이 1% 이상인 종계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양성종계는 소유자가 살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자율적 실시 여부가 의문시 됨 - 또한 기록상으로는 전수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 불가
경 기 도	<p>⑪ 수출 닭도축장 내수 수출 구분작업 지도</p> <p>○ 닭도축장에서 수출용 도계시에는 검역원의 검역관 입회하에 일자별 또는 시간대별(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도계 실시</p>	<p>○ 수출용 닭도축은 수출국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검역관의 관리하에 실시되고 있음</p>
방 역 본 부	<p>⑫ 산란계 농장 혈청검사 지속실시 및 농가 방역동향 파악</p> <p>○ 계획 : 2,702호(108,000수)</p> <p>○ 실적 : 3,934호(88,314수)</p>	<p>○ 산란계 농가수 통계 부정확 및 농가협조 미흡</p>
총 합 도	<p>⑬ 방역관리 추진실적</p> <p>○ 부화장 분무예방접종 및 확인서 발급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개소 확인 전 부화장 양호 <p>○ 도축장 9개소 소독실시사항 : 양호</p> <p>○ 양계농가에 대한 접종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리후렛 5,000부 배부 	<p>○ 일부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농가에서 예방약 부족시 2차 접종 미실시 - 뉴캐슬병 예방접종확인서 없이 수송

나. 시범사업 종합평가

- 1) 작년부터 뉴캐슬병 예방약을 부화장에 이어 농가까지 확대 지원한 결과 뉴캐슬병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되고는 있으나 예방접종여부 확인에 필요한 검사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 당초 예측한 바와같이 일선

방역기관의 업무부담 가중이 지적됨

- 2) 경기도에 한해 닭 도축장 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 첨부제도를 시범 실시하였으나 타 지역에서 사육된 닭이 경기도 관내 닭 도축장에 출하되는 사례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계열화 업체를 제외하고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

따라서 앞으로 전국적인 예방접종여부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도축장에서 "예방접종확인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의 추적이 가능토록 조치
- 3) 예방접종을 향상 및 검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과 인력이 적게 소요되는 ELASA법을 시험 적용하였으나 기존 HI법과 시험결과의 차이로 인해 ELASA법 보완 필요

앞으로 ELISA법과 HI법과의 검사결과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ELISA 검사방법 표준화 등 보완 추진
- 4)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를 위해 수출업체에서 지원한 검사인력을 활용한 결과 1인당 전체 검사소요인력의 10%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동 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확인
- 5) 도축장 위생관리 및 미생물·잔류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대체로 양호하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축장 위생 검사시스템 강화가 필요함
- 6) 또한 앞으로 전국적으로 동 질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 및 감시체제와 홍보를 강화하여 닭고기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함

다. 향후 추진계획

1) 뉴캐슬병 100% 예방접종 실시 및 혈청검사 강화

- 사육통계 차이에 의한 예방약 부족물량 추가지원 조치
- 부화장 지원 부족물량은 금년도 예방약 조달구매 잔액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닭도축장 출하시 추주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첨부제도 추진
- '02. 7월부터 뉴캐슬병 예방접종 미실시농가 과태료(300만원이하) 처분(6월말까지는 사전 제도 및 홍보)
- 육계 도축시 예방접종확인서 첨부제도 정착
- 닭도축장 출하 농가별 뉴캐슬병 혈청검사 확대(전 농가) 실시

2) 닭뉴캐슬병 혈청검사체제 개선

- 닭뉴캐슬병 혈청검사의 편이성과 시간·인력의 절약을 위하여 ELISA법을 현행 검사법인 HI법과 병행(50:50)하여 활용하되 결과 판정은 우선적으로 HI법을 기준
- ELISA법에 의한 결과의 판독기준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보완 등 추진
- 예방접종여부 판정을 위한 HI역가를 2로 설정('02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에 반영)
- 장기적으로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업무과중을 해소토록 ELISA 검사법을 표준화시켜 스크리닝 검사법으로 정착 추진

3) 수출업체의 검사인력 지원 추진

- 닭고기 수출 희망업체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전문검사인력을 지원토록 추진(계육협회, 농협 계육가공분사 등 협조)
- 닭도축장의 육계 혈청검사 확대에 필요한 민간인력지원 등 조치
- 산란계 농장은 당초 계획대로 농가채혈은 방역본부(방역요원), 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실시

4) 뉴캐슬병 예방접종 미실시농가 등 방역관리 위반농가 과태료 처분 정착 및 살처분 보상제도의 단

계적 도입

- 예방접종률(80%이상)과 발생빈도 등을 감안 살처분보상제도를 단계적 도입하여 발생신고 분위기 조성
- 살처분 보상제도의 도입전까지는 발생농장에 대하여 규제보다 농장을 방문, 원인규명·주변 지역 소독장비 운영 등 방역 기술지원을 강화
- 종계장·부화장의 뉴캐슬병 예방접종, 추백리 확인검진 결과 방역조치 위반사실 적발시 예방약 지원중단, 영업신고 반려 및 과태료 처분

5) 제도개선

- "닭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정 추진(3월중)
- 닭도축장 출하시 축주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첨부 의무화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 미실시농가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 현행 "돼지콜레라및닭뉴캐슬병예방접종명령" 고시는 폐지
- 뉴캐슬병 방역지침(SOP) 제작·배포

6) 홍보·교육 강화

- 경기도 사업추진 사항을 타· 시도 수출회망업체와 양계농가에 홍보
- 각 시·도 주관으로 수출업체와 협력하여 홍보·교육 실시
- 홍보캠페인·전국 양계농가 결의대회 등 추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협조, 돼지콜레라 수준으로 홍보 실시
- 닭도축장 검사원, 농장체형 방역요원, 전문지 등을 통한 홍보
- 생산자단체·협회, 수출업체 자율적 교육·홍보 협조 추진
- 닭뉴캐슬병 예방접종 미실시농가 과태료 처분 사전 계도
- 금년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예방접종 미실시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실시

5. 농가 당부사항

현재 정부는 대한양계협회 "위생·방역위원회"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방역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계농가는 동 위원회에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의 결정의사에 따르는 것도 질병의 근절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상기 위원회의 역할과 의견에 비중을 두고 당면한 현안사항을 하나씩 해결하여 양계농가의 닭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다만, 서두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농가 개별적인 방역은 정부의 지원에 기대하기 보다는 농가별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 줄 것을 농가에게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닭 질병 방역추진에 돼지콜레라근절대책의 추진강도와 버금가는 정책을 도입하여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돼지콜레라의 경우와 같이 닭 질병 방역 역시 농가의 적극적 참여 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방역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닭고기 수출확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뉴캐슬병, 추백리 등 전염병의 근절이 필요할 뿐더러 현행 비발생 증명제도의 체계적인 정착도 중요한 만큼 믿을 수 있는 종계장에서 병아리 구입, 농장간 차단방역(출입자·차량 소독) 등 자율방역에 더욱 노력하고 의심질병에 대한 조기 신고로 초동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관리를 잘 하고 있는 타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도덕적인 사고를 가져 주시기를 덧붙여 당부하고 싶다. C